

부산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2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철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3.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36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18436호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8. ‘C은 원고에게 10,826,665원과 그 중 4,249,986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아버지인 D은 2020. 3.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피고와 F, C, G이 있다.

다.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3. 26. 망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3.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제36900호로 2020.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마쳐진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한 재산분할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의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C과 오래 떨어져 지냈고 왕래가 거의 없어 C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별지